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5 선고 2023가합102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림 담당변호사 황용

변호사 전병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중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임석

변론 종결2024. 9. 10.

판결 선고2024. 11. 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내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2021. 11. 1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각 특허청 2021. 11. 15. 접수 E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1. 11. 15. 접수 F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1. 11. 15. 접수 G로 마친 각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주위적 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예비적 청구로 인한 부분의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21. 9.경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내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2021.

11. 1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특허권 내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마친 각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일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선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판결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10.경 광양시장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에 속하는 광양시 H 대 17007.5m²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9. 2. 1. 원고들과 위 토지에 입주자시설을 준공하여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원고 A는 2019. 8. 5. D의 채권자(위 입주자시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에게 376,000,000원을, 원고 B는 2019. 1.경 D의 또 다른 채권자(위 입주자시설에 관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에게 13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D는 위 입주자시설을 원고들이 아닌 I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들은 2021. 10. 6.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D는 원고 A에게 376,000,000원, 원고 B에게 13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7821호), 이에 D가 항소하였으나, 2022. 11.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22. 12. 8.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080호, 이하 위 1심 판결에 따른 원고들의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지식재산권의 양도

D는 2021. 1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특허권 및 같은 목록 순번 4 내지 5 기재 각 실용신안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번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21. 11. 15.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각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특허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21. 9.경 피고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하였는바, 위 영업양도는 무자력 상태에 있던 D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D사이의 위 영업양도계약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인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21.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무자력 상태에 있던 D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각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에게 D의 조직적·기능적 재산으로서 유형·무형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가 2021. 9.경 피고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21. 9. 15.경 D와 당시 D 소유이던 사천시 J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차임은 월 77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였을 뿐, D의 중요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2. 10.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D의 직원들 중 14명의 근로자들이 2019. 10. 1.부터 2021. 9. 1.에 걸쳐 D에서 퇴사한 후 2021. 9. 1.부터 2023. 4. 1.에 걸쳐 피고에 입사하고, D의 대표자였던 L 등이 2021. 11. 1.경 D에서 퇴사한 후 2022. 4. 1.경 피고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개별적인 퇴사·입사 이외에 피고가 D의 인적 조직 자체를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는 D와 별도의 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을 양수하였을 뿐, D의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거래처정보, 생산설비, 자재 등을 일체로 양수하지는 않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D의 다른 채권자인 M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번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D로부터 양수한 지식재산권들(이 사건 제5번 지식재산권은 제외)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합10535호,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22. 9. 1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번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22. 9.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번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21. 11. 12. 이전인 2021. 10. 6.경 발생되었으므로, 원고들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자 D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21. 11. 12. 무렵 D는 채무초과 상태, 즉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의 2021. 12. 31. 기준 표준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8,028,270,674원, 부채총계는 12,329,191,659원, 자본총계는 -4,300,920,985원이었고, 2021. 1. 1.부터 2021. 12. 13.까지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익은 -1,583,925,108원이었다.

② D는 2021. 3. 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1. 4.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1.

10. 18.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회합10010호).

③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21. 11. 12. 당시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각 압류·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1	2021. 1. 15.	가압류	N	80,000,000
2	2021. 1. 22.	가압류	주식회사 O	20,009,195
3	2021. 1. 25.	가압류	P은행	88,442,709
4	2021. 2. 2.	가압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4,043,551
5	2021. 2. 3.	압류	광양시	알 수 없음
6	2021. 3. 10.	가압류	주식회사 Q	48,734,220
7	2021. 3. 15.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알 수 없음
8	2021. 9. 29.	가압류	근로복지공단	189,911,940
9	2021. 11. 5.	가압류	M	81,326,001
10	2017. 11. 22.	근저당권1) 기술보증기금이 2021. 3. 1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대위변제(1,444,214,521원)하여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됨.	중소기업은행	8,400,000,000
총합계	9,182,467,616			

④ D는 2021. 9.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2022.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2022.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신고하였다.

⑤ D는 2021. 11. 2. 피고에게 200,8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이후,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는바, 2021. 11. 12. 무렵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지적재산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21. 11. 12. 무렵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재산이자 선박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에게 필수적인 선박 제조에 관한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1. D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을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D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1,100만 원이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대가에 이를 정도라거나, D가 위 양도대금을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21. 9. 15.경 D의 선박 제조 공장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선박 제조 공장으로 등록·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9. 1.경에는 D에서 퇴사한 직원 7명을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D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D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 중 이 사건

제1 내지 4번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마친 각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제5번 지식재산권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여 더 이상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치훈

판사엄현재

판사양희정

별지

1) 기술보증기금이 2021. 3. 1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대위변제(1,444,214,521원)하여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됨.